

석면비산측정 결과표

1. 작업장 개요

측정의뢰자 (석면해체·제거업자)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	
	두호주공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(1차)	
	두호주공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(3차)	
	현장 소재지	
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로 66 두호주공아파트 1차	
	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번호	업자명(상호)
	포항-20170072 (1차)	(주)삼오공영개발
	포항-20170129 (3차)	
	전화번호	대표자
	031-457-2703	박래식

2. 측정기간 - 2017년 04월 14일(1일간)

3. 측정자(분석자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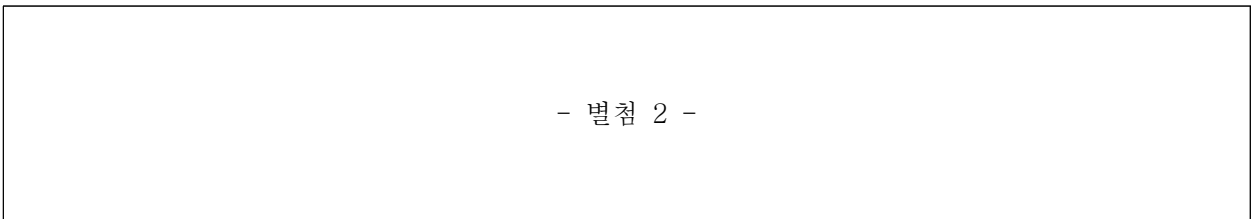
성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고
위진형	대기환경기사	04202072176X	측정자
최인준	대기환경기사	06201074059W	분석자

4. 측정결과

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(개/cm³)	초과여부
------	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

- 별첨 1 -

5. 측정 위치도(측정 장소)



2017 년 04월 14일

주식회사 메트로리사이클링



(주)삼오공영개발 귀하

-별첨1 -

04월 14일

시료번호	측정위치	측정시간(min)	유량(l/min)	측정농도 (개/cm ³)	초과 여부
A-1	부지경계1	240	10.2	0.0023	미만
A-2	부지경계2	240	10.1	0.0020	미만
A-3	부지경계3	240	10.1	0.0021	미만
A-4	부지경계4	240	10.2	0.0022	미만
A-5	거주자주거지역1	120	10.1	0.0036	미만
A-6	거주자주거지역2	120	10.4	0.0037	미만
A-7	거주자주거지역3	120	10.3	0.0034	미만
A-8	거주자주거지역4	120	10.4	0.0031	미만
A-9	작업장주변실외	120	10.3	0.0030	미만
A-10	실외위생설비	40	10.2	검출한계미만	미만
A-11	13동 위생설비	40	10.3	검출한계미만	미만
A-12	13동 음압기1	40	10.3	검출한계미만	미만
A-13	13동 폐기물반출구	40	10.2	검출한계미만	미만
A-14	5동 위생설비	40	10.1	검출한계미만	미만
A-15	5동 음압기1	40	10.2	검출한계미만	미만
A-16	5동 음압기2	40	10.1	검출한계미만	미만
A-17	5동 폐기물반출구	40	10.2	검출한계미만	미만
A-18	폐기물보관1	40	10.3	검출한계미만	미만
A-19	폐기물보관2	40	10.4	검출한계미만	미만

LOD : 7 f/m³

석면배출허용기준 : 0.01 f/c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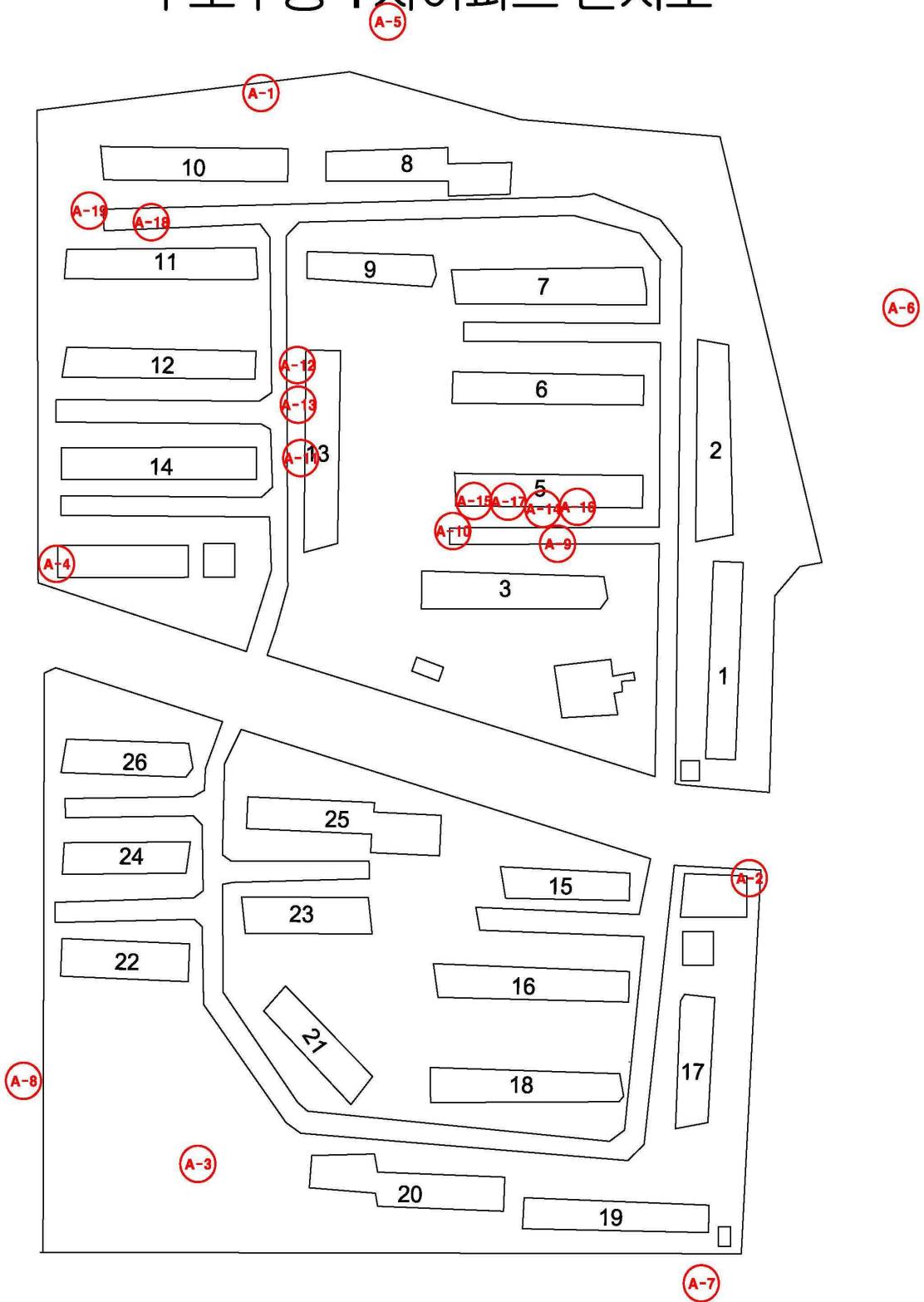
분석방법 :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(ES 02303.1) 위상차현미경법, NIOSH7400 Method 위상차현미경법

본 보고서는 법적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사의 허가 없이 복사, 재발행 될 수 없음.

별도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7일 이내 폐기됨.

04월 14일

두호주공 1차아파트 단지도



측정 사진
04월 14일



A-1 부지경계1



A-2 부지경계2



A-3 부지경계3



A-4 부지경계4



A-5 거주자주거지역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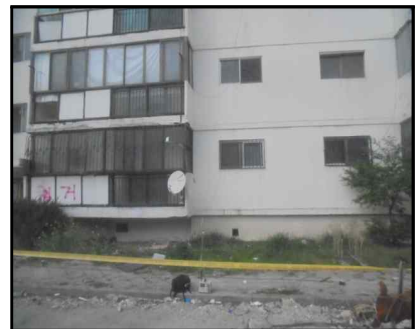
A-6 거주자주거지역2



A-7 거주자주거지역3



A-8 거주자주거지역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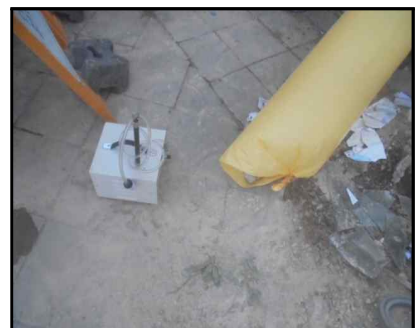
A-9 작업장주변실외



A-10 실외위생설비



A-11 13동 위생설비



A-12 13동 음압기



A-13

13동
폐기물반출구



A-14

5동 위생설비



A-15

5동 음압기1



A-16

5동 음압기2



A-17

5동
폐기물반출구



A-18

폐기물보관1



A-19

폐기물보관2

제2013-120002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관명	주식회사메트로리사이클링	
소재지	(140-748)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70 (도원동, 도원동삼성래미안 아파트상가 4층) 408호	
대표자성명	이영태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할 지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3. 6. 26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

